3.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판단

청구인이 수령한 결혼축하금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차 분할납부분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에 대하여서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서울고등법원 2010.2.10. 선고 2008누2283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결혼축하금 중 청구인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천여만원은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글.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사	건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세	목	인용(위헌확인)

결정요약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2. 12. 8. 06:00경부터 2012. 12. 18. 13:00까지 ○○구치소 13동 하층 14실에 수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의 납부를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 12. 8. 0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구치소 13동 하층 14실(면적 8.96㎡, 정원 6명, 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된 사람이다.

○ 청구인은 2013. 3. 7.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2012. 12. 8. 0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이 사건 방실에 수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2. 12. 8. 0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청구인을 이 사건 방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2. 12. 8. 06:00경부터 2012. 12. 18. 13:00까지 ○○구치소 13동 하층 14실에 수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4 이유의 요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12. 12. 20. 이미 석방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 ·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수용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참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다. 과밀수용의 문제점

○ 오늘날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재사회화(再社會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교정시설의 수용면적, 관리인원의 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수용인원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이른바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위생 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싸움 · 폭행 · 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게 한다.

라.이 사건 수용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 · 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당시 서울구치소의 수용현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이 사건 방실에 수용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되었던 2012. 12. 8.부터 2012. 12. 18.까지의 기간 동안 시간별로 이 사건 방실에 실제로 수용된 인원은, 12. 8. 16:00부터 12. 9. 16:00까지(24시간, 1일)는 4인, 12. 9. 16:00부터 12. 11. 21:00까지 및 12. 14. 13:00부터 12. 18. 13:00까지(149시간, 6일 5시간)는 5인, 12. 11. 21:00부터 12. 14. 13:00까지(64시간, 2일 16시간)는 6인이었다.

○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예산확보, 수용인원 발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수형자가 인간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

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정원 6명)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6인이 수용된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5인이 수용된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위와 같은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청구인이 접견 및 운동을 위하여 총 10시간을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보충의견

○ 불가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제10조,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 · 기록 등에 관한 지침', 관련 국제규범, 외국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5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천명한 최고의 헌법이념이자 국민 각자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재확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개별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여 인용(위헌확인) 결정을 한 사례이기도 하다.

○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용행위에 대하여 인용(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모든 유관기관에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 내에 교정시설에 수형자의 인권 보장 및 재사회화의 목적 달성에 알맞은 수용환경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위 결정례 이외의 다른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선고사건 – 최근 주요 결정'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